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7. 12. 29.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11월 21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7년 11월 22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53회 정기회 제9차 행정재무위원회('97.12.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김종박)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내무부에서 일괄허가하여 시달한 자치구세감면조례안에 의거 우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우리 구세감면조례중 현실에 부적합한 조항은 삭제하고 적합한 사항은 조항을 신설하였고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삭제조항
 - 제10조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 신설조항
 - 제12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 제15조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제18조 (재래시장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 제19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 제20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 제21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제22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 제25조 (직접사용의 의미)
 - 제27조 (감면자료의 제출)
 - 제28조 (중복감면의 배제)
 - 적용시한 : 2000년 12월 31일까지.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준석)

동조례(안)의 개정은 본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영등포구 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구 현실에 부적합한 사항 등을 삭제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면개정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0
----------	-----

제출일 : 1997년 11월 21일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19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내무부에서 일괄 허가하여 시달한 자치구세면조례안에 의거 우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사회복지지원,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 대중교통지원, 지역발전지원 등의 목적으로 제정시행한 우리구세감면조례 중 현실에 부적합한 조항은 삭제하고 적합한 사항은 조항을 신설 하였고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삭제조항
 - 제10조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 신설조항
 - 제12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 제15조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제18조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 제19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 제20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 제21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제22조 (전쟁기념사업회 대한 감면)
 - 제25조 (직접사용의 의미)
 - 제27조 (감면자료의 제출)
 - 제28조 (중복감면의 배제)
- 적용시한 : 2000년 12월 31일까지

3.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9조, 내무부세제 13400-337('97.10.10)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 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점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 234조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 지구안의 부동산

제4장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

제9조(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부속 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을 면제한다.

제10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직전연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한다.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 365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times 365}{\text{영업기간(일 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 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1조(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2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한 자동차관리 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사무 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4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7조에 의하여 지

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17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센타가 그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받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2조(전쟁기념사업회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을 면제하고 동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을 면제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무허가 건물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대상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24조 (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제2조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제6장 보 칙

제2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별지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신청서				처 리 기 간
				7 일 간
성 명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감 면 내 용	세 목	년도 / 기 분	당 초 세 액	감 면 세 액
감 면 사 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 제 조			
<p>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위 신청인 인(서명) 영 등 포 구 청 장 귀 하</p>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
<p>제2장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p> <p>제3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p> <p>제10조(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용 부동산(고속철도본선·정차장·차량기지·정비창·궤도부설 전진기지·송전선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② 한국고속철도공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업소세(재산할)와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p> <p><삭 제></p> <p><삭 제></p> <p>제12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5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7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제18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제19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p>

현행	개정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 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 수행을 위하여 받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p> <p>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22조(전쟁기념사업회계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사업에 종사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p> <p>제2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p> <p>제2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기 타 사 항> 제1조(목적),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제6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9조(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10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7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자 구 수 정> 제1~3조, 제6조, 제9조~제10조, 제13조, 제17조</p>